

농지연금 가입 '60세'부터 가능해진다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2.22 18:52 | 댓글 0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18일 개정·시행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담보 농지 매도 가능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으로 농지은행 활용한 농업인 은퇴계획 수립 안정적 지원 등이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해 가입 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경영이양형 상품의 경우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 사망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 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해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되면서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농지연금 사업 10주년을 맞아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농업인,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을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